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461
----------	------

2025년 4월 2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5년 2월 3일
다. 회부일 : 2025년 2월 6일
라. 상정일 :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3월 4일 상정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4월 23일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정진우 평생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운영

○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1조

- 추진 필요성

-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129 (개관일자 : 2005. 6. 1.)
- 시설규모 : 부지 6,257㎡ / 건물 5,470㎡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소극장,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 민간위탁기간 : 3년(2025.7.1.~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827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302백만원, 운영비 839백만원, 사업비 2,128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558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제10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서대문 청소년센터(이하 '서대문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향후 3년간(2025.7.~2028.6.) 본 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개요 〉

- **위탁사무명** :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운영
- **위탁사무**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129
- **시설규모** : 부지 6,257㎡ / 건물 5,470㎡
- **개관일자** : 2005. 6. 1.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소극장, 프로그램실 등
- **위탁기간** : 3년(2025.7.1. ~ 2028.6.30.)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4,827백만원(20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302백만원, 운영비 839백만원, 사업비 2,128백만원, 사업외 지출 및 기타 558백만원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서대문청소년센터는 청소년 대상 수련활동 사업, 교육문화사업, 상담·보호 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활동시설로, 평생교육국은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고 있음.

※ 서대문구는 서북권에서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의 연결축이고, 9개 대학이 있는 자치구로 신촌 일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정주 또는 직주근접 여건이 갖춰진 자치구임.

○ 서대문청소년센터는 2005년 개관하여 수탁기관의 변경없이 20년간 사단 법인 한국청소년재단(이하 '한국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의 시설로, 28명(정규직 17명, 계약직 11명, 2025.1. 기준)의 직원이 15억원의 예산으로 5개 분야, 13개 사업, 10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서대문청소년센터의 민간위탁 현황 〉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최초위탁	3년(2005.06.01.~2008.05.31.)	(사)한국청소년재단	공개모집
2차 위탁	2년(2008.06.01.~2010.07.31.)	(사)한국청소년재단	재계약
3차 위탁	3년(2010.08.01.~2013.06.30.)	(사)한국청소년재단	공개모집
4차 위탁	2년(2013.07.01.~2015.06.30.)	(사)한국청소년재단	재계약
5차 위탁	3년(2015.07.01.~2018.06.30.)	(사)한국청소년재단	공개모집
6차 위탁	2년(2018.07.01~2020.06.30.)	(사)한국청소년재단	재계약
7차 위탁	3년(2020.07.01.~2023.06.30.)	(사)한국청소년재단	공개모집
8차 위탁	2년(2023.07.01.~2025.06.30.)	(사)한국청소년재단	재계약

〈 서대문청소년센터의 정현원 현황 〉

(단위 : 명, 2025.1.1.기준)

구분	총계	정 규 직										비 정 규 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기능	고용	소계	계약	기타
정원	28	28	1	1	1	2	4	8	6	3	2	-	-	-
현원	28	17	1	-	1	-	3	8	4	-	-	11	5	6

〈 2025년 서대문청소년센터의 사업구성 〉

(단위:천원)

	내용	계획인원	소요예산	
			수입	지출
총계	107개 프로그램	543,115	3,277,739	1,893,442
I.시설이용료수입	3개 프로그램	34,120	182,406	0
1. 시설이용료수입	3개 프로그램	34,120	180,256	-
II.교육문화사업	9개 프로그램	38,710	243,120	121,850
2. 정규강좌	5개 프로그램	34,080	243,120	110,790
3. 교육문화운영사업	4개 프로그램	4,630	-	11,060
III.생활체육사업	6개 프로그램	157,824	1,400,328	747,873
4. 정규강좌	4개 프로그램	157,824	1,400,328	484,056
5. 생활체육운영	2개 프로그램	-	-	263,817
IV.청소년목적사업	54개 프로그램	271,060	1,053,765	623,450
6. 청소년자치기구	10개 프로그램	19,010	173,640	79,180
7. 지역연계사업	14개 프로그램	64,240	30,920	40,620
8. 청소년참여활동	14개 프로그램	6,810	6,200	22,750
9. 청소년전용공간운영	2개 프로그램	20,600	-	4,700
10. 동네학교(교육문화)	8개 프로그램	75,680	639,325	351,388
11. 동네학교(생활체육)	6개 프로그램	84,720	203,680	124,812
V.특별지원	35개 프로그램	41,401	400,269	400,269
12. 특별사업	29개 프로그램	27,688	233,975	233,975
13. 기타민간위탁금	6개 프로그램	13,713	166,294	166,294

〈 최근 3년간 서대문청소년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현황 〉

(단위: 천원)

연 도	총계	위탁운영비	기능보강비	기타사업
2024	1,361,976	659,707	198,658	503,611
2023	1,331,184	762,552	262,780	305,852
2022	1,232,284	712,500	266,895	252,889

〈 2025년 서대문청소년센터의 총 세입세출예산 현황 〉

(단위: 천원, %)

구분	예산과목	2025년	구성비율	2026년(안)	구성비율	
세입예산	계	4,930,000	100%	5,050,000	100%	
	위탁금	민간위탁금	1,308,539	27%	1,330,953	26%
		민간위탁사업비	200,000	4%	200,000	4%
	보조금	국비보조금	122,844	2%	122,844	2%
		시비보조금	-			
		구비보조금	45,450	1%	45,450	4%
	사업수입	시설이용료 수입	191,106	4%	195,883	4%
		사업별수입	2,615,255	53%	2,697,138	53%
	사업외수입	법인전입금	-	-	-	-
		이월금	20,641		20,641	0%
기타잡수입		426,165	9%	437,091	9%	
세출예산	계	4,930,000	100%	5,050,000	100%	
	인건비	1,297,817	26%	1,330,110	26%	
	운영비	840,499	17%	867,352	17%	
	사업비	1,906,199	39%	1,944,918	39%	
	민간위탁사업비	401,984	8%	412,034	8%	
	사업외지출	425,403	9%	436,037	9%	
	예비비	17,169		17,598		
	지난년도지출	-	-		-	
	반환금	-	-		-	
	일반관리비	500		512		
	이윤	-	-		-	
	부가가치세	40,429	1%	41,439	1%	

○ 2024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2023.1.~12. 성과) 결과 조직편제, 높은 이직률, 예산의 연말집행 집중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개선요청 사항이 있었음.

〈 2024 시립청소년시설 운영평가 중 개선요청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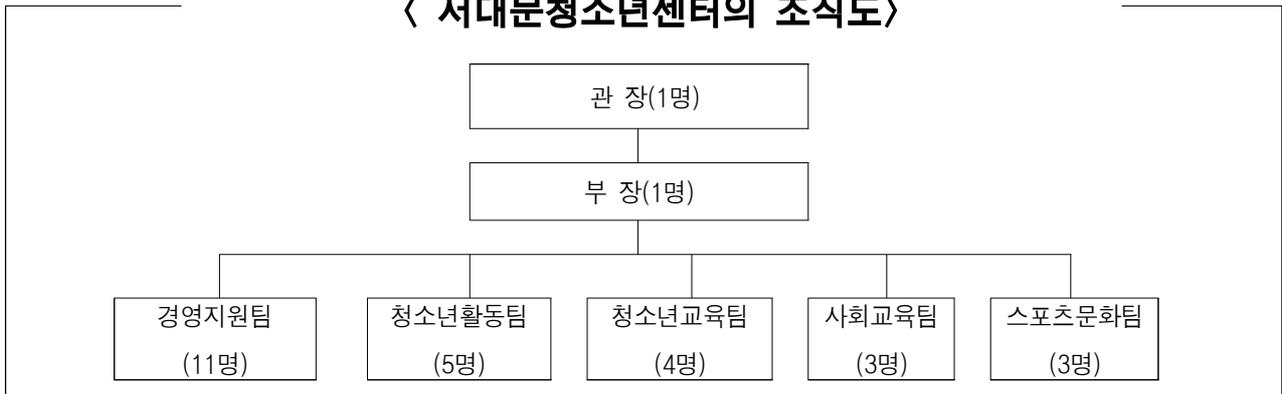
- 기관 현원 대비 세분화된 조직인원 편제(사회교육 2명, 스포츠문화 2명)의 효율화 방안 검토 등 경영시스템 안정화 노력 강화가 요구됨
- 평가년도 기준 정규직 27명 중 9명의 이직이 발생하여, 이직 시 면담을 통한 제도 개선 환류 및 신입직원 업무적응력 제고를 위한 업무매뉴얼의 구체화·현행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 분기별 전체예산 예산집행 실적의 경우 1분기 74.53%, 2분기 77.31%, 3분기 97.10%, 4분기의 경우 예산 편성 누락 대비 집행액 발생으로, 분기별 예산편성 기준액 대비 적절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한 분기별 예산편성 계획의 적정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비 분기별 예산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2023년 전체 예산액 대비 1분기 60.34%, 2분기 80.71%, 3분기 105.04%, 4분기 136.26%의 집행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하반기에 예산 집행이 집중되어, 사업 추진 시기를 고려한 분기별 예산편성 계획의 적정성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지도점검 및 감사 지적사항이 주로 재무·회계 분야에서 발생함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지적사항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시행이 필수적임.

- 2025년 2월 기준 서대문청소년센터는 위탁사무 추진을 위해 5개팀을 구성·운영하고 있고, 이중 사회교육팀은 도예, 피아노, 수학, 성인영어 회화, 파닉스(phonics, 영어 읽기·쓰기 교육), 가족공예 강사과정반 등 총 61개를 시간대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문화팀은 수영, 헬스, 스피닝, 줌바, 째즈, 라인댄스 등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조직도상 사회교육팀과 스포츠문화팀은 총 6명(팀장 2명 포함)이나, 육아 휴직자도 1명 포함하고 있어, 총 5명의 인원이 9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인력배치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대문청소년센터도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소년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운영비 충당 등을 위한 강사 활용 방식을 적극 도입하여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 공공성 및 효과성 부분에서 평생교육국이 너무 낮은 수준의 지도·점검의 수준을 유지하여, 서울시도, 수탁기관도 책임지지 않는 강사 활용 사업추진이 보편화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수탁기관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민간위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관행을 근절하는 한편, 민간위탁 추진의 합리성과 효율성, 더 나아가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생교육국의 대책 마련이 우선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에게 제공해야 할 공공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관리·감독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서대문청소년센터의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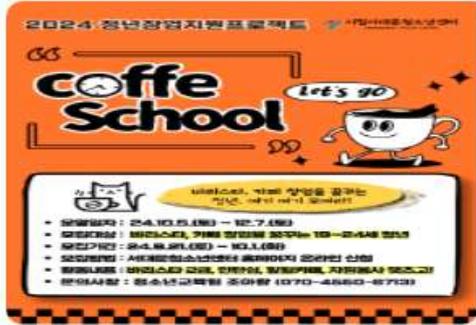
- 서대문청소년센터의 청소년활동 중 연중 추진하는 사업은 단 3개(줍깅, 안산 생물탐사, 세계시민교육) 뿐이며, 3개 중 2개는 한시적 사업으로, 청소년이 상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적은 것으로 보임.
 - 청소년활동으로 분류된 프로그램 대부분이 ‘초등 저학년’ 또는 ‘청소년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소년활동의 강화 및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대문청소년센터 누리집 중 청소년활동 중 일부 발췌 〉

청소년활동

시립청소년센터 > 청소년활동 > 청소년활동

기후변화	독립역사	미디어
요리	축제	진로



2024 청년창업지원프로젝트 <커피스쿨> 참가자 모집

- 대상** 바리스타, 카페 창업을 꿈꾸는 19~24세 청년
- 기간** 2024.10.5.(토)~12.7.(토)
- 내용** 바리스타, 카페 창업을 꿈꾸는 19~24세 청년과 함께하는 청년창업지원프로젝트
- 문의** 070-4550-6713



안산플레이 에코티어링

- 대상** 초등 & 가족
- 기간** 연중
- 내용** 안산 생물다양성 탐사 및 미션 수행 프로젝트
- 문의** 070-4550-6721

○ 청소년활동으로 구분된 프로그램은 청년 창업 프로젝트<커피스쿨>, 요리 축제<남남축제>, 비빔밥나눔<비벼樂>, 서대문<힘차밥차> 등 외관상 청소년 전용 프로그램이 다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활동으로 구분해야 할 사업들이 청소년활동으로 게시되고 있음.

- 서대문청소년센터는 청소년사업을 수행하고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또는 성인, 지역주민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대다수를 차지하도록 구성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 구성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청소년시설의 전용성보다 지역 기여가 과도하게 반영된 것은 아닌지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서대문청소년센터의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는 회계·인사, 구비서류, 절차 미이행 등 시설 운영에 있어 매우 기본적인 사항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바, 20년간 본 시설을 운영한 수탁기관의 ‘청소년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 추후 민간위탁 기관 선정시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한 단체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한편, 평생교육국의 지도·점검 시 적출사항이 회계·인사, 사업추진 절차에 한정되는 이유가 평생교육국이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회계·인사 등의 분야에 대해서만 낮은 수위의 지도·점검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청소년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추진 방식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3년간 서대문청소년센터의 지도·점검 결과 >

연 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2022년	일일결산 미흡	조치 완료
	매입세액공제액 회계처리 미흡	조치 완료
	경력산정 시 전력조회 실시 미흡	조치 완료
	휴직자에 대한 승진 및 승급 제외 규정	조치 완료
2023년	예수금 통장 관리 미흡	조치 완료
	수의계약 구비서류 미흡	조치 완료
2024년	계약 절차 미준수 및 수의계약 구비서류 미흡	조치 완료
	복무관리 (사전결재·근태관리) 미흡	조치 완료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내용 미흡	조치 완료

- 평생교육국이 청소년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낮을 경우, 수탁기관의 서비스 품질 저하, 부적정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관리·감독하지 못하여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바,
 - 적정수준의 지도·감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분야에 최소한의 이해 또는 소양 등이 평생교육국에 요구된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461
----------	------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인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 6. 30. 만료 예정임에 따라,
- 나. 청소년 사업 관련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의 필요성

-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
- 진로직업·창의적 체험활동 등 청소년센터를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높은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청소년 요구에 적절한 대응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청소년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며 현장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사무 내용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
-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지원사업
- 청소년센터 관리·운영(시설물, 장비 등 포함)
-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129
- 개관일자 : 2005. 6. 1.
- 시설규모 : 부지 6,257㎡ / 건물 5,470㎡
- 주요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소극장, 프로그램실 등
- 이용대상 : 청소년 및 시민
-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5.7.1. ~ 2028.6.30.)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4,827백만원('25년)
- 산출근거
 - 인건비 1,302백만원, 운영비 839백만원, 사업비 2,128백만원, 사업외지출 및 기타 558백만원

아.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11조(협약체결 등)

-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작성자 :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태영 (☎02-2133-4124)